

부 칙

현	행	개	정	안
제75조(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·전학 및 편입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교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	제75조(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·전학 및 편입학) ①	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학교군의 관 할 교육장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교육장이 학교를 배 정한다.
1. 2. (생 략)		1. 2.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학교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		② ----- 받은 교육장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		

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
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③・④ (생략)

제98조의2(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.

1. (생략)

2.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
학생

3. (생 략)

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
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
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98조의3(학력인정과 학년결정
을 할 수 있는 학교 등) ① 제96
조제1항제2호, 제97조제1항제3
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
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
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복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제98조의2(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다문화
학생 및 외국인 학생

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8조의3(학력인정과 학년결정
을 할 수 있는 학교 등) ① ---

한이탈주민등(제98조의2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----- . 다만, 초등학교의 장은
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학년결
정을 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

연 락 처

(044) 203 - 6987